

의안번호	2202664
의 퇴 인	신정훈 의원
회 답 일	2024.08.21.
추 계 번호	24C26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200만원으로 추계

[표 1]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안 제18조의5 (보호자의 의무 등 실태조사)	42	-	-	-	-	42	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의5 (보호자의 의무 등)	(제4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2	안 제28조의3 (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학생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2.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로서 필요한 교육	의무규정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량규정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제5항)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8조의5 (보호자의 의무 등)	○	
2	안 제28조의3 (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	×	·현재 시·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의무교육, 전환기 학부모교육, 학부모캠퍼스, 학조부모교육 등’ 다양 한 학부모 교육사업을 운영 중이나, 개정안의 제안 이유 ¹⁾ 를 고려할 때, 법 시행 이후 보호자교육에 대 한 체계적 시책 마련과 이에 기반한 기존 보호자 교 육사업의 확대 또는 실태조사 등 관련 사업의 신설 가능성이 있음 ·다만,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 및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증가 또는 신설될 사업의 구체적 내역 및 단가 등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가 곤란한 내용을 제외하고, 본 추계에서는 안 제18조의5의 시
행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조사 범위 및 방식, 주기 등에 따라 소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개정안은 이에 대하여 대통령령 및 조례에 위임하였으므로 본 추계서에서
는 교육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함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664호) 제안이유
(...) 현행법상 보호자가 의무 등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부재하여 실효
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교권 침해 및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
육공동체의 회복과 학부모의 역할 재정립 등을 주문한 교권 보호 4법의 개정 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
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뚜렷하게 인지할 필요
가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이하 생략)

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보호자의 의무 등 이행에 관한 점검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교육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비용을 추계할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개정안의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최근 3년간 실시한 초·중등 과정 관련 실태조사와 유사한 규모 및 예산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실시 주기는 동 개정안과 같이 의뢰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하게 5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함
 - － 교육부는 2021년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실태조사 및 요구 분석 연구”(40,909천원), 2022년 “2023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연구”(45,455천원), 2023년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고등학교 수업 유형별 학생 참여 실태조사”(39,000천원) 연구용역을 실시
 - 이 경우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 소요비용으로 위 실태조사 연구용역 소요비용의 평균 값인 총 4,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함

[표 2] 보호자의 의무 등 이행 점검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비용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안 제18조의5 (보호자의 의무 등 실태조사)	42	—	—	—	—	42	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교육부의 유사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실제 조사대상 규모, 범위, 주기 등에 따라 실제 재정소요는 변경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